

요촌상설시장부지용도폐지승인(안)

의 번	안 호	98~107
--------	--------	--------

제출 년월일 : 98. 12.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제안 이유

-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중인 요촌 상설 시장 현대화 사업의 추진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목 공사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건축 공사가 추진됨에따라 지방재정법 제82조 제5항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 .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의하여 요촌 상설 시장 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분양함으로써 요촌 상설 시장 현대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2. 주요 골자

- 김제시 요촌동 423-2번지의외 4필지 5,658.5㎡의 요촌 상설 시장 부지를 용도폐지

3. 참고 사항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5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
-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
-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4조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종 별	재 산 소 재 지	지목및구조	수 량	금 액	비 고
공공용 재 산	김제시 요촌동 423-2 번지의외 4필지	잡종지	5,658.5 m ² (1,711 평)	시가표준액 3,065,600 천원	

2. 재산의 현황

종 별	당초재산 조성및취득내역			현용도	관리 상태	연 고 자 유 무
	년월일	목 적	취득당시 가 격			
공공용 재 산	1972년	공용시장 부 지		상설시장 부 지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중	

※ 김제 요촌동 430-5번지 119 m²중 29 m² : 소송 계류중

- 소송 내용 : 김제시 요촌동 453-2번지 김 성화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다는 사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청구
- 소송 진행 상황 :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김제시패소)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여 현재 진행중

3. 용도 폐지 사유

- 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나. 요촌 상설 시장 현대화 사업및 분양의 원활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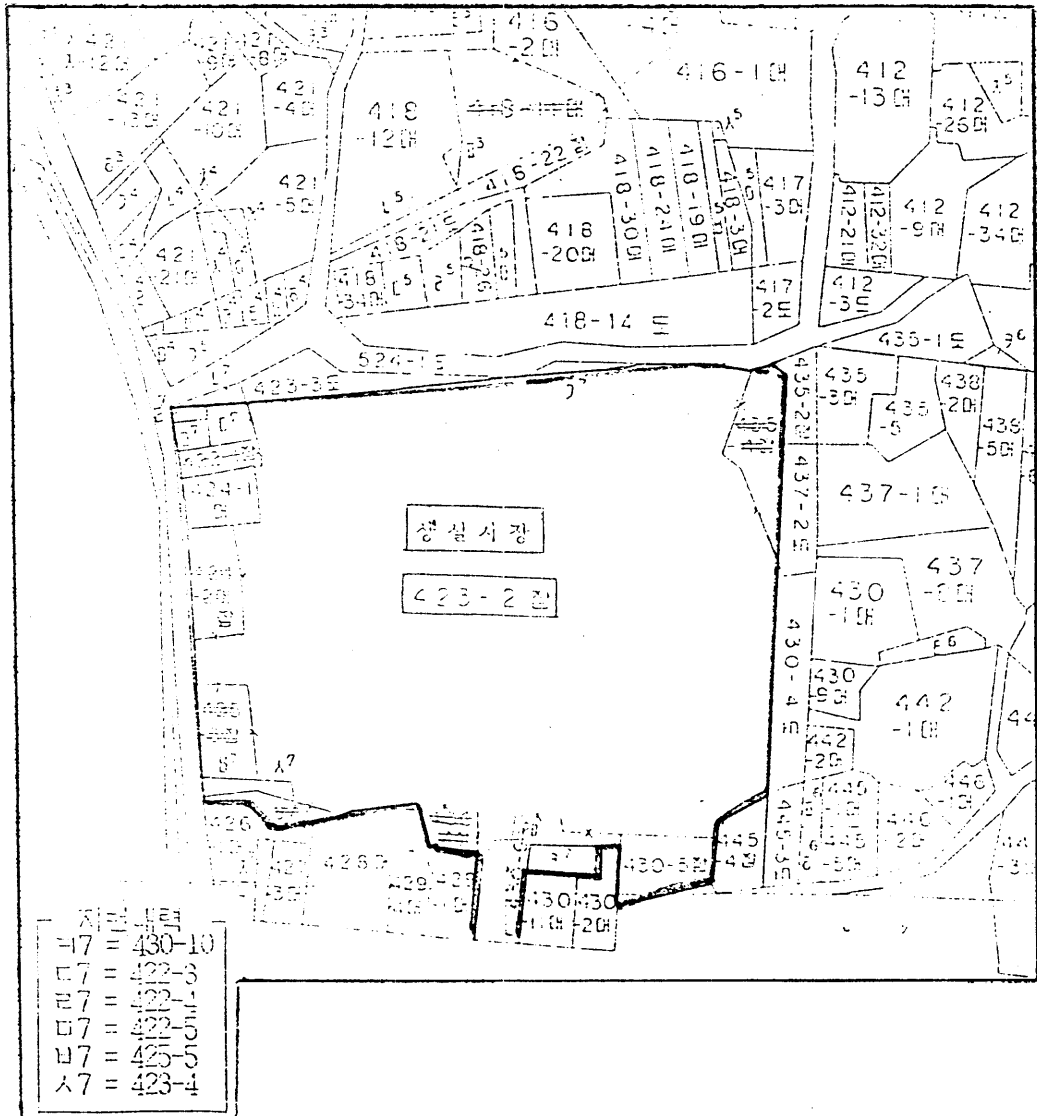
4. 용도 폐지후 활용 방안

- 요촌 상설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건축물을 신축 분양하여 분양 입주자에게 매각함.

5. 소유권 증명

- 1989년 5월 27일 및 1998년 7월 1일 등기 (김제시 소유)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토지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공시지가)
시	동					주소	성명	
				5822 (/..)	5822			
김제	요촌	423-2	잡종지	5478	5478	서암동 353	김제시	1,110,000원
김제	요촌	430-5	잡종지	119	119	서암동 353	김제시	319,000원
김제	요촌	424-1	대지	83	83	서암동 353	김제시(1/2)	1,100,000원
						전주시덕진구 인후2가1579-25	윤유병(1/2)	1,100,000원
김제	요촌	422-3	대지	36	36	서암동 443-6	한정준	1,120,000원
김제	요촌	422-4	대지	10	10	서암동 353	김제시	1,230,000원
김제	요촌	422-5	대지	23	23	서암동 353	김제시(10/23)	949,000원
						서암동 443-6	한정준(13/23)	949,000원
김제	요촌	425-5	대지	20	20	교동 110	윤영복	800,000원
김제	요촌	423-4	잡종지	7	7	교동 110	윤영복	800,000원
김제	요촌	430-10	대지	46	46	걸산동 1030-2 부영APT 101/ 1104호	김명수	344,000원

○ 시유지 : 5필지 5,658.5 ㎡

○ 사유지 : 6필지 163.5 ㎡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 번	안 호	98~102
--------	--------	--------

제출 년월일 : 98. 12

제출자 : 김 제 시 장

1. 제안 이유

- 요촌 상설 시장 현대화 사업의 건축 공사가 본격 추진되고, 사업의 재원 마련 및 사업 취지에 의하여 기존 상인과 일반인에게 분양하고자함.

2. 주요 골자

- 요촌 상설 시장 현대화 사업 부지 5,658.5 m²(1,711평)와 신축 예정 건물인 15,714 m² (4,753 평)을 기존 상인과 일반인에게 매각 처분 (분양)하고자함.

3. 참고 사항

- 지방자치법 제 35조
- 지방제정법시행령 제 84조
-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99년도 관리 계획 총괄표 (7-1)

회계명 : 일반 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1. 매 입										
	2. 교환으로 취득										
	3. 기타 취득										
처 분	계	토지 건물	5 1	5,658.5 15,714	6,131,201 18,244,978			5 1	5,658.5 15,714	6,131,201 18,244,978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 분양
	4. 매 각	토지 건물	5 1	5,658.5 15,714	6,131,201 18,244,978			5 1	5,658.5 15,714	6,131,201 18,244,978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 분양
	5. 양 여										
	6. 교환으로 처분										
사용및 대부 허가		토지 건물 기타									

99년도 매각 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 회계

(단위: m² · 천원)

입력번호	재 산 포 시		매 대 수	각 상 량	과표 또는 평 가 액	매각시기	매수 희망자 주소, 성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1	집중지	요촌동 423-2	5,478	5,478	6,025,800	99년3월	분양	98지가기준
2	집중지	요촌동 430-5	119	119	37,961	99년3월	분양	98지가기준
3	대 지	요촌동 424-1	83	41.5	45,650	99년3월	분양	98지가기준
4	대 지	요촌동 422-4	10	10	12,300	99년3월	분양	98지가기준
5	대 지	요촌동 422-5	23	10	9,490	99년3월	분양	98지가기준
6	건 물	요촌동 423-2일대	15,714	15,714	18,244,978	99년3월	분양	투자사업비 기준
계	토 지	5 필지	5,713	5,658.5	6,131,201	99년3월	분양	98지가기준
	건 물	1	15,714	15,714	18,244,978	99년3월	분양	투자사업비 기준